

	<b>평생교육원규정</b>	규정번호	3-7-16
		제정일자	1996.03.01.
		개정일자	2020.03.01.
		개정차수	8차
		소관부서	평생교육원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부설 평생교육원(이하 “본 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본 원은 평생교육사회 구현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질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업무 사항을 관장한다.

제3조(위치) 본 원은 대학(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(일동))에 둔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본 원은 제2조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열린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
2. 정부, 지자체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
3. 소외계층, 특수교육등 장·단기 특별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
4. 기타 교육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## 제2장 조 직

제5조(조직) ① 본 원에 전임교원으로 원장을 두며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(지도교수) 본 원의 각 전공과정(반)에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지도교수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③ (교직원)본 원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.

④ (명예원장)본 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인 이상의 명예원장을 둘 수 있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 ① 본 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이 된다.

제7조(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 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2. 사업운영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
3. 사업 운영에 따른 운영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개정 및 폐지 관한 사항

## 6. 기타 본 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9조(회의)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(2월, 8월)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
2.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/3이상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본 원 소속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
제11조(의결)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4장 교육과정운영

제12조(교육기간 및 교육 일수) ① 본 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기간 및 시간은 평생교육원장이 각 과정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.

② 특별 과정의 교육기간 및 시간은 관련 기관이 정한 기간에 준하거나 또는 평생교육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원자격) 본 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·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4조(선발방법) 본 원의 학습자 선발은 각 모집단위별로 원서접수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.

제15조(수강료) ① 본 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수강료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16조(수료 및 수료증 교부) 본 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총장명의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17조(준용) 교육과정운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학칙에 따라 운영하며 관련 학습과정에 별도의 운영지침이 있을 경우 그 지침에 따른다.

제18조(운영지침) 본 원의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과정별 운영지침 필요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5장 학습자 활동

제19조(자치회) ①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 및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원우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원우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.

제20조(학습자 활동의 금지) 학습자는 본 원 학습기간 동안 집단행동·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제21조(포상)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.

## 제6장 회 계

제22조(회계연도) 본 원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3조(예산편성) 본 원의 수강료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

제24조(수입원) 본 원의 운영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수강료
2. 대학 보조금
3. 위탁훈련 지원금(위탁훈련시)
4. 기타 수입

제25조(회계집행) 본 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원에서 관장하고 대학 행정지원처에서 수탁한다.

## 제7장 시행규칙

제26조(시행규칙) 본 원의 원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9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